

## ●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-355호

###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09월 16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#### 1. 개정이유

향후 모듈형 제품의 출시를 대비하여, 모듈형 제품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#### 2. 주요 개정내용

가. 모듈형 제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, 일반제품과 달리 소비지에서 결합이 가능한 제품임을 규정(안 제2조)

나. 모듈형 제품으로, 소비지에서 결합된 제품을 출고 전 생산지에서 결합되어 KC인증을 취득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(안 제3조)

다. 모듈의 추가·분리로 인한 세부품목 변경시 이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별도의 표시방법 마련(안 제59조)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 → 고시·공고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